

의안번호	제34호
의결연월일	2017. 6. 8.

**논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 
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**심사보고서**

**1. 심사경과**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5월 23일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2017년 6월 8일,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

**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환경과장)**

**가. 제안이유**

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,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 등 불합리한 조례사항에 대한 중앙부처의 개선계획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를 도모하고자 함.

**나. 주요내용**

- 명칭변경
  - ‘폐수종말처리시설’을 ‘공공폐수처리시설’로 변경(안 제명, 안 제1조, 안 제2조제1호, 안 별표 1, 안 별표 2, 안 별지 제1호서식~별지 제9호서식)
  - ‘폐수종말처리장’을 ‘공공폐수처리시설’로 변경(안 제14조, 안 제17조제1항)
- 현행 구비서류중 건축물대장은 행정공동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므로 구비서류목록에서 삭제(안 별지 제1호서식)

○ 다른 조례의 개정

- 변경된 법률명 또는 용어 대로 각각의 관련 조례에서 근거 법률명과 용어를 정비(안 부칙 제3조제1항~제9항)
- 중앙부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계획에 따른 정비(안 부칙 제3조 제10항·제11항)
  - 유료화장실 설치 신고자 준수사항 삭제
  - 분묘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고, 기간연장은 30년 한번으로 완화

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**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